

제 1 조 해석

구매자(“구매자”)는 본 판매조건에 기재된 상품이나 용역을 발주함으로써 자신이 쿠어스텍아시아(유)(“쿠어스텍아시아”) (자회사를 포함함)의 경북 및 경기도 성남시 (우편번호: 463-862) 소재 주된 영업장 및 기타 쿠어스텍아시아가 해당 상품을 제조하거나 해당 용역을 제공한 장소에서 거래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제 2 조 견적

쿠어스텍아시아는 이 문서의 명칭을 “판매조건”이라 규정하고 있지만, 매도거래 제의서 (“거래제안서” 또는 “주문서”)로 간주하고자 한다. 본 주문서의 조건은 서면으로 된 매도주문확인서 또는 견적서에 규정되거나 언급된 내용과 더불어 매도거래합의서전체를 구성한다. 쿠어스텍아시아는 구매자가 거래제안서를 수락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거래제안서를 철회할 수 있다.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쿠어스텍아시아의 모든 거래제안서는 발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실효된다.

제 3 조 거래제안서의 수락 및 인정

본 거래제안서를 수락하여 구매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구매자가 본 거래제안서의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된다. 구매자가 거래제안서의 조건을 수락하는 것은 “본 판매조건”을 비롯하여 거래제안서에 기재된 사양서, 가격 및 기타 조건으로 명시적으로 제한한다. 구매자의 주문서에 기재된 이와 다른 또는 이에 추가된 조건은 본 거래제안서에 대한 중대한 변경으로 간주되어 명시적으로 거절되며, 쿠어스텍아시아의 수권대리인의 서면 승인 없이는 무효임을 알려드리는 바이며, 구매자는 이를 인정한다. 쿠어스텍아시아는 구매자가 일방 당사자인 주요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규정된 모든 조건을 거절한다.

제 4 조 가격

상품가격은 구매자가 해당 상품에 대한 대금지급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쿠어스텍아시아가 구매자에게 청구하는 청구서에 적절하게 포함되어야 함), 관세, 포장, 선적 및 하역과 관련된 비용이나 요금, 운임과 보험 (자동차 리콜 보험 및 (해당되는 경우) 기타 보험 등)이 제외된 금액이다. 쿠어스텍아시아는 본 주문서 이행기간 동안 쿠어스텍아시아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원재료, 임금 또는 해당 상품 생산원가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경우 가격을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한 가격인상은 쿠어스텍아시아가 구매자에게 그러한 가격인상에 대한 증빙서류를 포함한 서면 통지를 제공한 후 30일 후에 발효된다.

제 5 조 수출관련규정 준수

본 판매조건에 의해 판매된 상품은 국제무기거래규정, 수출관리규정, 미사일기술통제체제를 비롯한 미국과 한국의 수출관리법령 및 방위산업의 수출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미국 법률, 한국 법률 또는 기타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쿠어스텍아시아가 제공한 상품, 기술자료 및/또는 용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출, 재수출하거나 달리 이전하지 아니한다. 구매자는 구매자의 수출관리법을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필요한 미국 및/또는 한국 정부의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구매자는 항상 이러한 법령을 완전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또한 해당 상품에 대한 관세 납부를 포함하여 해당 상품을 도착지 국가로 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법령을 완전하게 준수할 독자적인 책임을 지며,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은 모든 상품의 선적을 위하여 수령하거나 활용한 모든 문서를 쿠어스텍아시아에 제공한다. 쿠어스텍아시아는 구매자에게 구매자의 관련 수출입 법률 준수와 관련된 인증서를 쿠어스텍아시아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구매자는 구매자가 관련 수출입 법률, 규정, 명령 및 정책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쿠어스텍아시아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에 대하여 쿠어스텍아시아를 면책한다. 쿠어스텍아시아가 수출 인허가를 획득할 것이 요구되는 주문은 추가 수수료 및/또는 최소 주문수량의 대상이 된다.

제 6 조 항공기 구성품

구매자의 주문서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 거래제안서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용도는 (군용 또는 민간) 항공기에 사용된 구성품 또는 조립품의 구성품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님을 보증한다.

제 7 조 의료기기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구매자는 본 거래제안서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용도는 이식할 수 있는 의료기기에 사용된 구성품 또는 조립품의 구성품으로 사용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완성된 의료기기가 아니며, 미국 식품의약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의료기기도 아님을 보증한다

제 8 조 제조

본 주문서의 대상인 상품이 구매자가 제공한 도면 및/또는 사양서(“사양서”)에 따라 제조될 것이 요구되는 경우 쿠어스텍아시아는 사양서를 엄수하여 해당 상품을 제조한다. 구매자는 쿠어스텍에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하는 경우 언제든지 사양서를 변경할 수 있다. 그와 같이 사양서를 변경한 결과 기간의 지연, 쿠어스텍아시아의 추가 비용, 또는 더 이상 사용불가능한 원재료, WIP 또는 완제품이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특정 상품이나 재료의 노후화가 발생한 경우, 가격 및 인도일정을 공평하게 조정한다.

제 9 조 인도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인도는 제조업체 부지 운송인인도가격 조건(F.C.A.)으로 한다.

제 10 조 소유권 및 손실위험

손실의 위험과 소유권은 인도시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제 11 조 운송인

모든 운임, 보험료 및 기타 선적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한다. 구매자는 수령시 화물파손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적물을 검사하고, 즉시 운송인에게 해당 화물파손에 대하여 통지하고, 직접 운송인에게 청구를 제기하고, 쿠어스텍아시아에 파손에 대하여 통지한다. 쿠어스텍아시아는 화물파손 또는 화물파손이나 지연으로 인하여 구매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 취급수수료

쿠어스텍아시아가 구매자를 대리하여 운임을 선지급하고, 그와 같이 선지급한 요금을 본 주문서의 총원가에 추가하기로 합의한 경우 구매자는 매 선적시 추가적인 관리취급수수료를 쿠어스텍아시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제 13 조 감사 및 취소

구매자는 인도 즉시 상품이 구매자의 사양서를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품을 검사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상품 인도 후 30일 이내에 검사하여야 한다. 해당 상품이 구매자의 사양서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구매자는 검사 후 5영업일 이내에 서면 통지를 제공한다. 구매자의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구매자의 권리는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으로 제한된다.

제 14 조 보증

쿠어스텍아시아는 본 거래제안서에 의해 제공된 상품은 (i) 재료와 기술상 하자가 없으며; (ii) 본 거래제안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구매자의 사양서를 준수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쿠어스텍아시아가 제공한 보증은 해당 상품 인도시에 개시하여, (정부규정에 의해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로부터 12개월 동안 유효하게 지속된다. 이러한 보증은 구매자나 그 대리인이나 고객의 남용, 오용, 사고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손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보증은 본 거래제안서에 의해 제공된 상품에 대한 쿠어스텍아시아가 제공하는 유일한 보증이다. 쿠어스텍아시아는 본 판매조건에 의해 제공되거나 쿠어스텍아시아의 책자 또는 기타 판매브로셔에 기재된 상품이나 기타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어떠한 종류의 기타 보증도 하지 아니한다. 쿠어스텍아시아는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대한 묵시적인 보증은 명시적으로 부인한다.

제 15 조 구매자의 구제수단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쿠어스텍아시아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해당 상품이나 용역을 수선 또는 교체하거나 구매자의 계정에 대변기재함으로써 구매대금을 반환한다. 쿠어스텍아시아가 이러한 선택권 중 하나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다른 상황에서 다른 선택권을 행사하는데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반품상품승인번호를 먼저 부여받지 않고는 쿠어스텍아시아에 상품을 반품할 수 없다.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쿠어스텍아시아에 반품하고 시정되거나 교체된 상품을 인도하는 경우 비용은 쿠어스텍아시아가 부담한다. 다만, 쿠어스텍아시아가 검사한 후 반품된 상품이 구매자의 사양서를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구매자는 쿠어스텍아시아가 해당 상품이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음을 확인할 때 까지는 반품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한다. 명시적이고 배타적인 보증 구제수단의 목적은 구매자에게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는 상품의 교체, 교환 또는 환불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배타적인 구제수단은 쿠어스텍아시아가 그와 같이 사양서를 충족하지 않는 상품을 교체, 교환 또는 환불할 의향과 능력이 있는 한 그 본질적 목적 달성에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쿠어스텍아시아는 직접 손해를 초과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쿠어스텍아시아는 부수적 손해, 결과적 손해, 특별 손해 또는 징벌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책임의 제한

쿠어스텍아시아는 (a) 부수적 손해, 특별 손해, 징벌적 손해, 결과적 손해 또는 간접 손해 또는 (b) 매출 손실, 영업 손실, 일실이익, 데이터 손실, 기회 손실 또는 영업권 손실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형평법, 보통법, 불법행위, 계약, 금반언, 과실, 엄격책임 또는 기타 이론에 의한 본 주문서의 주제와 관련하여 구매자 또는 기타 제3자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본 주문서에 규정된 구제수단이 중요한 목적을 결여하고 있거나 해당 당사자가 전술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하여 고지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법령 또는 보통법 상 묵시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보증 및 조건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본 판매조건에서 제외된다. 본 판매조건에 포함된 어떠한 내용도 쿠어스텍아시아가 자신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을 불법인 사항이나 사기 또는 허위진술에 대한 쿠어스텍아시아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 17 조 대금지급

구매자는 본 주문서에 규정된 대금을 쿠어스텍아시아에 지급하기로 합의한다. 대금지급 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쿠어스텍아시아가 승인이 있는 경우 대금지급 기한은 연장가능하며, 그와 같이 대금지급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 17.1 모든 주문은 경영진의 승인 및 신용 및 대금지급 조건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를 받아야 하며, 신용 및 대금지급 조건은 사유가 있는 경우 쿠어스텍아시아가 합리적인 기간을 두고 통지하여 변경할 수 있다. 지급기한 내에 지급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매월 1½% 이율 (연이율 18%)의 지연이자(가)가 추가된다. 구매자는 지급지체된 청구금액 수금을 위하여 쿠어스텍아시아가 지출한 모든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 수금비용 및 기타 경비를 지급한다.
- 17.2 전신환송금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전신환 송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이루어진다.

대한민국 원화	미국 달러화 및 일본 엔화
쿠어스텍아시아(유) 기업은행 구미3공단 지점 계좌번호: 400-001495-04-021	쿠어스텍아시아(유) 기업은행 구미3공단 지점 Swift Code: IBKO KRSE DAE 계좌번호: 400-001495-56-00018

- 17.3 수표송금이 요구되거나 필요한 경우, 수표는 다음 주소지로 발송된다.

쿠어스텍아시아(유)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 구미국가4단지 23-1-11 롯데 우편번호 730-400 전화: 82.54.478.6000 팩스: 82.54.476.6100

제 18 조 상계

구매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만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 예정인 모든 청구액은 본건 주문서나 구매자와의 다른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구매자의 반대청구액이 있는 경우, 쿠어스텍아시아가 동 금액을 감액하거나 상계한다.

제 19 조 면책

구매자는 (a) 전유적 정보의 잘못된 사용 또한, 구매자가 쿠어스텍아시아에게 제공하거나 구매자와 관련하여 쿠어스텍아시아나 제3자가 개발한 디자인, 도면, 사양서나 기타 정보에 근거한, 특허, 상표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대한 청구, (b) 단독으로 혹은 조립 부품으로 상해 또는 손상이 주장되거나 그러한 사실이 입증된 제품의 설계, 제조, 통합이나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가 제기한 손해 또는 그에 대한 책임, (c) 구매자가 미국의 수출관리법령 및/또는 그에 대한 명령을 포함하여, 한국, 미국 및 지역 법률, 법령, 규칙, 명령 및 규정을 위반하거나 쿠어스텍아시아에게 그와 관련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한 손해나 책임 및 (d) 본 판매조건상의 구매자의 의무사항에 대한 중대한 위반으로부터 발생한 모든 책임, 손실, (쿠어스텍아시아가 부담한 합리적인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비용으로부터 쿠어스텍아시아, 그 주주, 모회사, 계열회사, 자회사,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을 면책하고, 그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0 조 지적재산권

본 주문서의 이행과정에서 쿠어스텍아시아가 처음으로 제작 혹은 고안하였거나 당사자들간의 기밀준수계약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구매자가 제공한 정보를 사용하여 도출되었거나 이를 근거로 이루어진 모든 발명이나 지적재산은 쿠어스텍아시아의 재산이며, 구매자는 쿠어스텍아시아의 그러한 소유권을 완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현재 혹은 향후 쿠어스텍아시아가 보유하는 모든 특허, 영업비밀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어떠한 허여, 옵션 또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구매자는 또한 본 판매조건에 따라 판매된 제품을 판매, 디컴파일, 분해 또는 역설계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 21 조 보험

구매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의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a) 관련 법률상 요구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자책임보험
- (b) 사고당 최소보상한도, 통합한도 및 완성 제품 작동 통합한도 미화 1,000,000달러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포괄배상책임보험
- (c) 미화 1,000,000달러 이하를 한도로 하는 종합자동차책임보험
- (d) 피보험 자산의 교체비용을 부보하는 상업용재산종합보험

모든 보험증권은 쿠어스텍아시아에 대한 대위변제권을 포기하는 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구매자는 요청에 따라, 쿠어스텍아시아에게 보험증권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피보험자로 쿠어스텍아시아를 명시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본 주문서상의 보험관련 규정의 일부 혹은 전부를 불이행하였거나, 본 주문서상의 조건 및 규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증권에 대한 배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본 판매조건상의 구매자의 의무사항을 제한하거나 이를 경감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 22 조 툴링 (Tooling)

쿠어스텍아시아가 본 주문서에 따른 자신의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요구한 툴링은 쿠어스텍아시아의 자산으로 쿠어스텍아시아가 보관하며, 구매자는 쿠어스텍아시아의 수권 대리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는다.

제 23 조 담보

쿠어스텍아시아는 구매자가 쿠어스텍아시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매자가 공급한 모든 툴링, 금형 또는 달리 쿠어스텍아시아가 설계, 제조, 조립 또는 사용하는 기타 자산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한다.

제 24 조 하도급자

쿠어스텍아시아는 구매자의 동의 없이 본 주문서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적으로 유보한다.

제 25 조 양도

쿠어스텍아시아는 본 판매조건상의 자신의 모든 권리 또는 의무사항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구매자는 쿠어스텍아시아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판매조건상의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사항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제 26 조 고객에 의한 일정조정

본 주문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본 판매조건에 따라 주문된 모든 상품은 본 주문서 일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인도된다. 구매자가 주문된 수량 이하의 제품수량을 구매한 경우, 구매자는 선적된 수량에 근거하여 재 산정된 단가로 선적수량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본 주문서의 잔량 부분은 취소된다. 구매자에 의한 인도일정의 변경은 사전에 서면을 통하여 쿠어스텍아시아와 합의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일정이 조정된 선적분 가액의 백분율로 표시되는) 최소한의 수수료가 발생한다.:

동월내 선적 = 0%,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 = 1개월당 2%
3 개월 내지 6개월 = 1개월당 3%

육(6)개월을 초과하는 일정조정요청 혹은 무기한 “보류” 요청에 대하여 쿠어스텍아시아는 본 주문서에 따라 자신이 보유할 수 있는 기타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이를 제27조에 따른 해지로 간주한다.

제 27 조 해지

- 27.1 일방 당사자는 본 판매조건에 명시된 조건의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본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은 위반한 당사자에게 위반에 대한 서면통지를 발송하며, 위반한 당사자는 서면통지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거나 시정계획을 쿠어스텍아시아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구매자가 자신과의 다른 주문이나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쿠어스텍아시아는 본 주문서의 전체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나, 구매자는 쿠어스텍아시아에 의한 그러한 해지의 경우에도 본 주문서에 따른 책임을 진다.
- 27.2 구매자가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양도를 하거나 합리적으로 그와 같은 양도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 경우, 혹은 회생 또는 파산 절차에 처해지거나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거나 서면으로 그러한 지급불능을 인정한 경우, 혹은 의무이행 능력에 대한 적절한 확신을 주지 못하거나 해산 또는 청산된 경우, 쿠어스텍아시아는 해지 3일전까지 사전 서면통지를 발송함으로써 본 주문서를 해지할 수 있다.

제 28 조 불포기/분리가능성

본 주문서에 따른 자신의 권리를 일방 당사자가 포기한 사실은 다른 경우에 있어서 당해 권리나 다른 권리에 대한 포기로 해석되지 않는다. 본 주문서의 어떠한 조항이 무효가 된 경우, 그와 같이 무효가 된 조항은 본 주문서의 나머지 조항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무효가 된 조항의 의도 및 경제적 효과와 가장 유사한 조항으로 동 조항을 대체하여야 한다.

제 29 조 독립계약자

본 주문서에 따라 이루어진 당사자들간의 관계는 서로 독립적인 계약자들간의 관계로서,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 당사자의 파트너, 종업원, 대리인 혹은 합작회사가 아니며, 본 주문서의 어떠한 내용도 쿠어스텍아시아가 유사한 상품을 제3자에게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제 30 조 구매자 제공 품목

구매자는 수시로 쿠어스텍아시아에게 본 주문서에 따라 판매될 상품에 포함될 품목을 제공할 수 있다. 쿠어스텍아시아는 구매자가 제공한 품목들을 보호 및 유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며, 쿠어스텍아시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분실, 손상 또는 사용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품목의 교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본 주문서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쿠어스텍아시아에게 제공한 동산품목은 본 주문서가 기한 만료된 경우, 통상적인 마모를 제외하고 원상태로 구매자에게 반환된다. 구매자는 본 판매조건에 따라 제공된 품목이 모든 관련 연방, 주 및 지역법규정에 부합되는 것임을 보증한다. 구매자는 또한, 제공된 부품이 모든 성능, 사양 및 검사기준에 부합된다는 사실을 보증한다.

제 31 조 존속

그 의미와 문맥에 따라, 일방 혹은 양 당사자의 의무이행 이후에도 존속하는 본 주문서의 조항은 본 주문서의 완료, 기한만료, 해지 또는 취소 이후에도 존속한다.

제 32 조 세금

구매자는 판매, 사용, 임대, 재산세 및 기타 세금을 포함하여, 본 판매조건에 따라 제공된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세금의 지급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33 조 면책되는 자연

쿠어스텍아시아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결과적 혹은 우발적인 손해를 포함한) 모든 손해 또는 의무수행의 지연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한 사유에는 화재, 홍수, 지진, 폭발 또는 기타 재난이나 사고, 파업 또는 노사분규, 부품, 전원 또는 동력의 확보불능, 전쟁이나 기타 폭동, 법률, 명령, 선언, 규정, 법령, 정부기관의 요구 또는 요건 또는 일방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영역을 벗어나는 모든 행위 또는 상황을 포함하나 그에 한정되지 않는다. 쿠어스텍아시아에게 면책되는 자연이 발생한 경우, 쿠어스텍아시아는 그러한 상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방식으로 구매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 34 조 수정 및 통합

당사자들은 본 주문서가 당사자들간의 추가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수정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본 주문서는 본 계약의 당사자들 간에 있었던 이전의 모든 구두 혹은 서면의 의사교환에 우선한다.

제 35 조 기밀준수

구매자는 쿠어스텍아시아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본 주문서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한다.

제 36 조 법률준수

당사자들은 각자가 모든 관련 한국, 미국 및 지역법률, 규칙, 규정, 법령 및 미국 행정명령(U.S. Executive Orders)의 해당 기준, 규정 및 조항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진술 및 보증한다. 또한, 각 당사자는 언제나 적법한게 행동하며, 공무원을 매수하기 위하여 본 주문서와 관련된 금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 영문본이 여하한 번역본에 우선한다.

제 37 조 준거법

본 계약은 섭외사법상의 원칙을 불문하고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율된다. 법원이 당사자들간의 합의사항을 해석함에 있어서 본 주문서에 포함된 조건에 추가하여, 특정 조건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 이와 달리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불구하고, 당사자들은 상이한 조건들이 한국 상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당사자들은 국제상품판매계약(Contracts on International Sale of Goods)에 대한 유엔협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계약의 당사자들은 Contract (rights of Third Parties) Act 1999에 기하여, 계약의 어떠한 조건을 동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제 38 조 관할지 및 관할법원

본 주문서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이나 다툼은 한국 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